질의에 대한 회신

<질의내용>

※ 의료기관에서 잠복 결핵감염 치료시[주1)] 치료약제(이소니아지드, 리팜핀)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

1. **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**하여 **잠복결핵 감염검사**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**양성**으로 진단받은 자
   - 35세 미만인 잠복 결핵감염인
   - 학교, 군대,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전염성 결핵 발병이 확인된 경우
   - 최근 2년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
   -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
   - 만성신부전, 당뇨병, 규폐증
   -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유회술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

2. 잠복결핵 감염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**HIV 감염자 또는 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인 경우**

주) 질병분류코드 : Z201(결핵에 접촉 및 노출), Z29.2(기타 예방적 화학요법)

<회신내용>

○ 임상문헌, 가이드라인,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, 질병관리본부(2011년)에서 제시한 결핵 진료지침에서 상기 환자들의 경우 이미 치료시행을 권고한 바 있고,

- CDC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) guideline 등도 동 환자군이 치료대상 환자군으로 선정되어 있음.

○ 또한, 잠복 결핵감염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HIV 감염인 또는 5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면역저하의 가능성이 높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약제(이소니아지드, 리팜핀)의 투여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 감염 치료시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치료약제(이소니아지드, 리팜핀)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(2011년)에서 제시한 결핵 진료지침, CDC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) guideline 등을 참조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함.